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의정정보

2

2015-2호



● 의정 · 입법 칼럼

-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팔방 미인”

●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원명의로 집행 못 한다.” 등 3건

●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제정 등 2건

●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3건

● 최근 제 · 개정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1건

● 대법원 판례 정보

-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의정 · 입법칼럼

- ▶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팔방 미인” (5)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원명의로 집행 못 한다.(행자부) (10)
-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불협화음(경기도) (12)
- ▶ “지방재정 건전화” 국제컨퍼런스 개최(서울시) (15)
- ▶ 강신정 전 의장 “20년째 공약 이행 중” (제주도) (19)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 ▶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제정(남원시) (21)
- ▶ 생활임금 조례제정(동작구) (24)
- ▶ 지식재산 진흥 조례제정(충주시) (28)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부산광역시) (36)
-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광주광역시) (42)
- ▶ 갑을 명칭 지양 조례제정(광주광역시) (47)
- ▶ 빅데이터 지원 조례제정(경기도) (49)

최근 제·개정 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57)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56)

대법원 판례 정보

- ▶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63)
- ▶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 (68)
- ▶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 판례 (72)





의정 · 입법 칼럼(1)

서 우 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徐宇善) 박사는,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제5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국회에서 20여 년 동안 국회사무처 경위계장, 의전계장, 서무계장, 인사계장, 국회 내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치관계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입법조사관, 행정관리담당관, 법제담당관, 홍보과장, 의정연수원 연수부장,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심의관 등 국회 입법업무는 물론 행정업무까지, 국회운영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전문가이다.

지방자치분야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예산·청원·진정 등의 심사에 참여한 실제경력이 있으며, 국방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고,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방자치전공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운영방법론』을 저술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세미나 교재로서 「지방의회 운영실무」 「지방의회 회의운영」 「예산결산심사기법」 「조례입법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조사기법」 「의원개인별 리더쉽 특성과 의정활동기법」 등을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자치행정·자치공론·자치발전·자치의정 등 월간지에 오랫동안 연재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례분석과 질의응답을 집대성하여 2000년도에는 『지방자치 의정사례집』을 출간하였으며, 2005년 11월 및 2010년 2월에는 문답전문 사례집 『지방자치 의정보좌관』으로 전면 개정판을 출간하여 보급하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자치행정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1991년도에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방의회개원 준비요원 290명과 전국 초선의원(당선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강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지방의회 개원을 도운 바 있으며, 그 후 지금까지 전국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위원세미나, 국회의정연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한국산업기술원,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지방의회 최고지도자과정, 서강대 경제정책대학원,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등의 특강과 명지대학교 와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후학들을 위한 출강으로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전국 지방의회와 집행부로부터의 전화문의·서면질문에 대하여 전문적인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는 등, 자치의정·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2년을 맞은 1997년도에는 당시 내무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 중 6과제 "생산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여건 마련"의 연구팀장으로 공청회를 거쳐 정부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당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40여년 넘도록 주역(周易)을 현대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주역』 『여성을 위한 주역』 등 4권의 저서를 펴낸 바 있으며, '생활주역'과 '명리론(命理論)'을 주제로 국회의정연수원, 국방대학원, 세무공무원교육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롯데그룹중앙연수원 등에서의 강의와 MBC 「아침 만들기」·EBS 「문화 센터」 등 방송에 출연한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의체의 운영원리와 주역의 현대 과학적인 변화원리를 '접목'하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발전모형에 꼭 맞는 의회운영방법을 계속 연구·개발하는 등 지방의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계속 활동 중이다.



<칼럼> 팔 방 미 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충청남도의회 입법고문 서 우 선

“자네가 한양까지 소문이 자자한 부용이더냐? 그렇다면, 무슨 일을 그리 잘 하
는고?”

“황망하옵니다. … 운(韻)을 주시면, 시 한 수 지어 바치겠나이다.”

“그래? — 그럼, 능(能) … 능할 능자를 주마.”

부용(芙蓉)은 운을 받자마자 일필휘지로 평양감사께 시 한 수를 바친다. 평양기생
부용(1)은 그 유명한 황진이(개성), 이매창(부안)과 함께 조선 3대 시기(詩妓) 중 한
분으로 평양 근교 성천에서 태어났다.

성천부용(成川芙蓉) 하사능(何事能) 능가능무(能歌能舞) 시사능(詩詞能)

능지능중(能之能中) 유일능(唯一能) 야반삼경(夜半三更) 환부능(歡夫能)

“대감께서 성천출신 부용에게 무슨 일을 잘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노래 잘하
고, 춤 잘 추고, 시와 글도 잘합니다. 그 잘하고도 잘하는 중에 유일하게 잘하
는 것은, 아님 밤중 깊은 밤에 지아비를 즐겁게 하는 일을 잘하옵니다.”

이제, 지방의회에는 전국적으로 두 분의 7선 의원까지 나왔다. 24년 전 모두 초
선일 때부터 그 동안 전국 지방의회 자문과 강의 등을 통하여 많은 지방의원을
알고 있다. 이 분들을 떠올리면, 대다수 팔방미인으로 기억난다. 팔방미인은 내
공(內工)을 쌓은 카리스마(charisma)와도 상통한다. 굳이 삼단논법을 들먹일 필
요도 없다. “당선의 비결”은 팔방미인이란 위력(?)도 중요한 몫을 하는 게 아닌
가!

사례를 들어 강의를 하다보면, 주어진 시간도 모자란다. 그래도 임기 중 전문
의정과목별로 강의에 참여한 지방의회라면, 임기 4년차 강의주제는 역시 “다음
선거 당선전략”이다.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 이 강의를 해드린 지방의회일수록
대부분 대(代)마다 재선율을 높여왔다.— 이 자리에서는 강의주제와 부합할 때는

1) 아호는 운초(雲楚), 성명은 김부용(金芙蓉)이다. 평안남도 성천 태생으로 충남 천안(광덕) 출신 평양감사 김이양(金履陽) 대감
의 소실로서 그 유언에 따라 천안에 ‘부용의 묘’가 있다. 기생신분은 정실이 될 수 없던 시대에 팔방미인 시 한 수로 대감의 소
실이 되어 정절을 지킨 지조를 음미해보면, 참으로 그 풍류·문학성은 기절 만하다. 묘를 찾게 된 1974년부터 매년 4월말 천안
문화원 주최로 천안문인협회, 천안향토사연구소, 천안차인회, 그 밖에 뜻 있는 많은 분들의 후원행사가 열린다(묘비 안내문 중에
서).

옆길로 새는 시간을 내기도 한다.

부용의 한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승전결(起承轉結) 4절(節)에 능할 능, 잘 할 “능(能)”자가 꼭 8개 들어 있다. 자기가 팔방미인임을 은근히 PR한다. 그 당시도 자기PR 시대인가 보다. 강의 중 밑줄 친 곳 세 군데만 바꿔 설명한 적이 여러 번 된다.

먼저, 기(起)절 중 “성천부용”을 “지방의원”으로 바꿔보자. “지방의원은 무슨 일을 잘하는가?” 승(承)절은 그대로다. 지역구에서는 “주민들과 즐거울 때마다 능가능무(能歌能舞) 해야 한다. 물론, 슬플 때는 아픔도 같이해야 한다.” 등원해서는 “미리 발의한 명품조례안의 제안설명, 날카로운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와 예산안·결산 등 중요 안전심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 시사능(詩詞能)해야 한다.”

다음, 전(轉)절도 그대로다. “잘하고도 잘하는 중에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란, 결(結)절 중에 그대로 이어진다. “야반삼경”을 “불철주야”로 바꿔보자. “자나 깨나” 무슨 일을 잘해야 할까? 지아비 “부(夫)”자를 백성 “민(民)”자로 바꿔보면, 저절로 나오는 정답은 환민능(歡民能)이다. “주민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국회로 진출하여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면 한다.

지방의원(地方議員)	하사능(何事能)	능가능무(能歌能舞)	시사능(詩詞能)
능지능중(能之能中)	유일능(唯一能)	불철주야(不徹晝夜)	환민능(歡民能)

국회의원은, 보좌관·비서관·비서 여러 명의 개별적 보좌를 받는다. 공식적 보좌를 하는 국회공무원의 인사권도 독립되어 있다. 거기다가 장관급 세비를 탄다. 이와 달리, 심의대상인 국정과 자치행정의 차이만 있을 뿐, 직무수행 방법상 동일한 지방의원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원보좌관 배치, 의회공무원 인사권 독립, 부지사급 의정비 합법적 현실화는 먼 길인가? 하루 속히 개선되기를 바란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필수기관이다. 필자가 20년 봉직한 국회만큼 존중한다. 열악한 실정임에도 지방자치를 위하여 본분을 다하는 지방의원이라면, 금배지보다 더 존경할 수밖에 없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원명의로 집행 못 한다

행자부 지방의원 업무비 집행기준 마련...31개 항목 외 금지

개인명의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행규칙에 명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지자체 업무비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지자체 업무비규칙은 자치단체장의 업무비 집행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지역 여론수렴 활동을 하면서 집행한 비용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했다. 또 일부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도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업무비규칙에 지방의원 업무비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중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자부의 지자체 업무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비는 ▲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 각종 회의·행사·교육 ▲ 의정활



동 및 지역 내 홍보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또 동료 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축·부의금을 제외하고는 지방의원 개인 명의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행방식도 제한된다.

행자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 개정안을 확정 짓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의원 업무추진비규칙이 마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해소되고,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경기가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나머지 시도가 130만~420만원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 예산액은 405억원(광역 93억원, 기초 312억원), 실제 집행액은 356억원(광역 85억원, 기초 271억원)이다.

하채림 기자 ree@yna.co.kr



2.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료' 불협화음

도시환경위 0.5% 고정요율화 조례 의결 '과장' "소비자 협상권 박탈" vs "업자와 갈등 해소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한데 대해 경기도가 부동의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매매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 수수료율을 0.9%에서 0.5%이내로, 임대차 거래 금액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 수수료율을 0.8%에서 0.4%이내로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국토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상한요율 조항에서 '이내'를 삭제하고, 고정요율화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상을 벌일 수 없게 됐다.

예를 들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행 조례는 거래가액의 0.9%를 상한요율로 정하고 이 범위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중개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정요율 조례안은 협상·분쟁 없이 거래가액의 0.5%를 중개료로 받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광명(화성4)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중개업자 99.7% ,소비자 63%가 수수료 고정화를 선호하는 통계가 있다"며 "소비자와 중개업자 거래에서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이 없고, 소송까지 가는 일도 없도록 수수료를 고정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해소방안을 위해서라면 거래세와 취득등록세를 내려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주머니를 털어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꾀하는 국가정책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도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내'를 뺀 고정수수료율은 소비자의 협상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상이 필요하다"고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도시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간에는 이번 수정안 가결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입법로비 탓"이라는 말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염종현(세정치·부천1) 의원은 "국토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부동산 수수료로 인한 민사 소송이 한 해동안 550여건"이라며 "

현재 소비자와 중개인의 분쟁 사태를 막거나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없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계류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소비자중 3.4%만이 국토부에서 상한요율을 조정한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금액을 거래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그런데 마치 국토부가 서민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에 대해 새정치가 일방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유리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염 의원은 "도의원은 후원회를 받을 수도 없는 열악한 구조인데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소문은 말도 안된다"고 피력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돼 시행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부동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바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3.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국제컨퍼런스 개최

세계 주요도시의 의회 대표가 모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세수감소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공유하고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주요도시의 의회 대표가 모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세수감소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공유하고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해외 의회 대표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 전국 지방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중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서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정책방향 개발 및 지방의회 의원 입법 권한 강화를 주요 개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방안,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 두 개의 기초강연 주제에 대해 각각 독일과 미국의 연사들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6개 해외도시 대표들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패널 지정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세계입법학회 부회장) 교수는 첫 번째 기초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자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 권리이며 재정 배분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지방 정부 상호 간 공정한 균형 및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인 2세로서 워싱턴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역임하고 시애틀에서 첫 여성 시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 마사 최(Martha Choe) 전 의원은 '글로벌 경제 내에서의 지방정부 리더십'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촉진과 비정부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실제 성공 사례를 제시해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와 자매결연도시인 해외 7개 도시 중 5개 도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바트툴가 다시잠츠(Battulga Dashjamts) 울란바타르 시의회 의장
 ▲호아트 반 르(Hoat Van Le) 하노이 시의회 부의장 ▲첸 위팻바원
 원(Shane Wipatbawonwong) 방콕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왕 치(Wang Qi) 베이징 시의회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 ▲라마잔 카
 바사칼(Ramazan Kabasakal) 앙카라 시의회 대외협력 부장 등이 자
 매도시 의회를 대표해 패널 지정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신혜(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이 참석해 의회
 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전절차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감액규모 증대
 등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한편 행사 직전 오프닝 공연에서는 소통과 상생의 길을 주제로 정주
 미씨(중요무형문화재 이매방 선생(27호 승무) 이수자)가 북소리에 몸
 을 실어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조화가 넘치는 세계의 모습을 담아
 내는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오프닝 공연을 기획한 허드슨재단은 미국 뉴욕에 위안부 기림비

를 세우고 연극 'Comfort'를 링컨센터에 올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린 주역이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재정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며 "유사한 어려움에 대응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지방 재정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컨퍼런스를 계기로 만들어진 상생과 협력의 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설기구인 '세계 지방의회협의체'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lovelypsych@newsis.com



4. 제주도의회

강신정 전 제주도의회 의장 '20년째 공약이행중'

제주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지역 원로가 “의정활동비를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한 공약을 20년째 이행하면서 귀감이 되고 있다.

강신정 전 제주도의장(78)은 1995년 제5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당시 지역주민에게 “의정활동비를 모아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강 전 의장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의원 당선 이듬해인 1996년부터 매년 설을 앞두고 지역구에 혼자 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써달라며 지역구 4개 동사무소에 10kg짜리 쌀 500포대를 기증했다. 강 전 의장의 기증 행사는 2002년 도의원을 그만둔 후에도 이어졌다. 강 전 의장은 올해에도 쌀 500포대를 동사무소에 기증하면서 20년째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금액으로도 3억원에 이르고 있다.

강 전 의장은 “누군가 쌀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쌀 전달을 멈출 수가 없다”며 “힘닿는 날까지 쌀 기증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전 의장은 5대, 6대 제주도의회 의원과 6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1.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제정

1.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

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

다. 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

시 사 점

○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산하기관에 대한 고용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필요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 2015.02.10 조례 제1150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지원

연 락 처 : 620-633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 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제정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안 제3조)

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마. 위원회 운영(안 제6조)

바. 생활임금의 결정(안 제7조)

시 사 점

○ 최저임금제도의 보완을 위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조례제정

⇒ 재정여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지원을 위한 정책필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2015.02.26 조례 제1205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담당관

연 락 처 : 02)820-13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의 예산담당 국장 및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전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제정

1. 제정이유

- 가.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을 규정, 따라서 우리시의 지역실정에 맞게 관련 근거 마련 시행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 확립.
- 나. 창조경제시대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역 우수한 지역재산 창출, 최우수 지식재산도시 선정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명시(제1조)
- 나. 지식재산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제7조)
- 다.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제12조)

시 사 점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 및 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검토 필요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정) 2015.02.13 조례 제1270호

관리책임부서 : 경제과

연 락 처 : 국번없이 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지식재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
 -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와 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법인·단체·협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시행 등)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활용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기술연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자
3.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이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재원의 지원) ①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의 실시·지원 등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최근 한·중 FTA의 영향에 따라 향후 우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 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김치 및 김치산업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김치산업 지원을 위해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 4조)

다. 김치산업 지원계획 등을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김치산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라.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김치산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사.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아. 「김치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음식류 제공 시 김치 등에 대해 유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차. 김치산업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카. 김치산업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군 및 김치산업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3조)

시 사 점

-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례의 제정
- ⇒ 전통음식의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2-25 조례 제 51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김치산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김치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김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김치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시장은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시장은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2. 전통김치의 규격화
3. 전통김치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4. 전통김치의 포장·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상품화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① 시장은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시장은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김치 유료판매 권장)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사업자에게 음식류 제공 시 김치 등을 유료로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김치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김치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려고 한 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 채용거부, 아동관련 기관의 등록 및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2조)

나. 시장의 책무(제3조)

다. 시행계획, 아동학대 예방 행사 및 홍보(제4~5조)

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제8조)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학생피해아동쉼터 설치 등(제10~11조)

바. 사업비 지원(제12조)

시 사 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기존 조례 개정
- ⇒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어린이집교사의 원생 폭행 등으로 아동관련 기관과 관련된 업종의 종사자에 대한 기준 강화필요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1-15 조례 제 3537호

(일부개정) 2010-08-05 조례 제 385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3-02 조례 제 3906호

(일부개정) 2012-10-15 조례 제 4164호

(광주광역시조례중직위명칭등이포함된조례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15-03-01 조례 제 44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3. "피해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7.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②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추진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행사 및 홍보) ①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간의 아동학대예방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 추이와 처리 실적, 아동학대 신고 요령 등이 담긴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포한다.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



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감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① 시장이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그 설립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해임하여야 하며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채용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회 결과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 그 아동관련기관의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유아 보육시설, 전문기관, 사법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례적인 간담회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관리 및 가정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6.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7.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 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피해아동 긴급 보호, 상담, 심리 및 정서 치료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제정

1. 제정이유

우리 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제2조).
- 나. 광주광역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제3조).
- 다. 적용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정함(제4조).
- 라. 각 자치구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함(제5조).

시 사 점

-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불공정으로 인한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제정된 조례
- ⇒ 갑을 관계에 대한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의 강화 및 보완 필요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제정) 2015-03-01 조례 제 44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광주광역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광주광역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홍보) 광주광역시장은 각 자치구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20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경기도의회 빅데이터 지원조례 제정

1. 제정이유

경기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빅데이터의 뜻을 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 나.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두도록 함(제6조)
- 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라. 경기도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시 사 점

○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를 총망라 하여 빅데이터라 정의하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다양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 필요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3-03 조례 제 48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도록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경기도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
-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정보화기획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기도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도 공무원과 도의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공무원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

제12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성인지 통계 자료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도지사는 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활용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빅데이터 실태조사) 도지사는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내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경기도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도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빅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실시) ①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빅데이터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빅데이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1.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농경문화를 유지하면서 농촌에 다양한 농업유산자원이 형성되었으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파괴되고 있는 실정임.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으로 농어업유산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어업유산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며,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30조의 2~3 신설)

시 사 점

- 다양한 농업유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통한 농어촌 개발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
- ⇒ 우리 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개 정 조 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 ·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 사회 ·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 · 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 시설 등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 신설(안 제24조)

국제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경감

나. 교통유발부담금 사무 위임 수수료관련 규정 개선(안 제29조)

시장이 관할 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 뿐만 아니라 군수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시 사 점

- 부가가치가 높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을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 ⇒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개 정 조 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 (부담금의 경감)①~④ (생략)	제24조 (부담금의 경감)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2.16]
⑥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2.16]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2.16][전문개정 2008.12.31]



대법원 판례 정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판시사항】

- [1]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형사책임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성의 인식’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 [5]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 [1] 헌법 제21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4] 공직선거법 제2조, 제250조 제2항 [5]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8조의2

【참조판례】

- [1][2][3][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공2012상, 200)
[1]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76)
[2][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공2005하, 1462)
[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공2006하, 1209)
[3][4]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5]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공2005하, 153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3인

【원심판결】대구고법 2013. 9. 26. 선고 2013노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위사실 및 그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
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별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저야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위 대법원 판결 및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을공소외 1 의원의 꿈수로 유력후보 뺀 여론조사 실시. 공심위 사실확인. 시도의원 공천대가로 5억 수취 등 공소외 1 비리폭로 및 검찰고소 예정.'이라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의혹에 불과하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거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 '허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증인 공소외 2의 이송 전 제1심 법원에서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증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탄핵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들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내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불



수 없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 358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문자전송내역이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탄핵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도12507 판결[공직선거법위반] > 종합법률 정보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도8330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추를 당하여 피고인이 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일 수 있다.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6. 9. 선고 2010노43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소외 종중 등이 피고인 1의 시장직 유지를 위하여 그에게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제공한 합계 1억 4,797만 원 상당의 자금은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그 적용법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형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1도8330 판결[정치자금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의 소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45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하여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는데, 위 조례안 제5조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조, 제9조, 제10조가 교원의 지위 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공1999하. 222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공1999하. 222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전 문】

【원 고】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3인)

【피 고】서울특별시의회

【변론종결】

2014. 1. 23.

【주 문】

피고가 2012. 6. 20.에 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경위와 그 내용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5. 2.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2. 5. 4.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이 사건 조례안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반하고, 교원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어서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교육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2. 5. 23.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6. 20.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학생의 수업방해나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제4조),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제5조),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등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6조),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7조),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 제10조)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효력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조례안은 제5조에서 교원의 성별, 종교, 신념, 나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교원의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9조, 제10조에서 교원의 지위 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하여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헌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헌법 제31조 제6항), 여기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교원의 자격·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권익보장·징계 등과 같이 신분의 취득·유지·상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

2) 이에 따라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4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역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6조 제1항). 또 교원에우에 관한 규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시·도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6조의2).

3)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는데(교육기본법 제7조),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었고(제1조), 여기에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제5조, 제5조의2). 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인 등은 해당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4) 한편 지방자치법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들고 있고(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2조),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5조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조, 제9조, 제10조가 교원의 지위 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제9조, 제10조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추145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5년 3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장

입법지원팀 주무관

문 경 주

최 정 업

함 정 업

❖ 연 락 처 : (041)635-5121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